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매뉴얼

탈취제(Deodorizing Agents)

2022.11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매뉴얼

탈취제(Deodorizing Agents)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Technology Institute

2022. 11.

! 주의사항

- 본 자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특히 물질의 고유번호 (CAS No.)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 내의 물질의 고유번호(CAS No.)는 각 물질의 대표적인 고유번호이며, 그 외의 물질들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해당 기업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검토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검토 후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한 사항은 해당 기업에서 법규 확인과 관할기관에 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매뉴얼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고 예방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목차

I.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1.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6
2.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방법	7
II.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0
2. 안전기준 시험 항목	10
3.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예시	11
III. 탈취제 안전기준 신고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28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등록	28
3. 안전기준 신고 예시	29
IV. 탈취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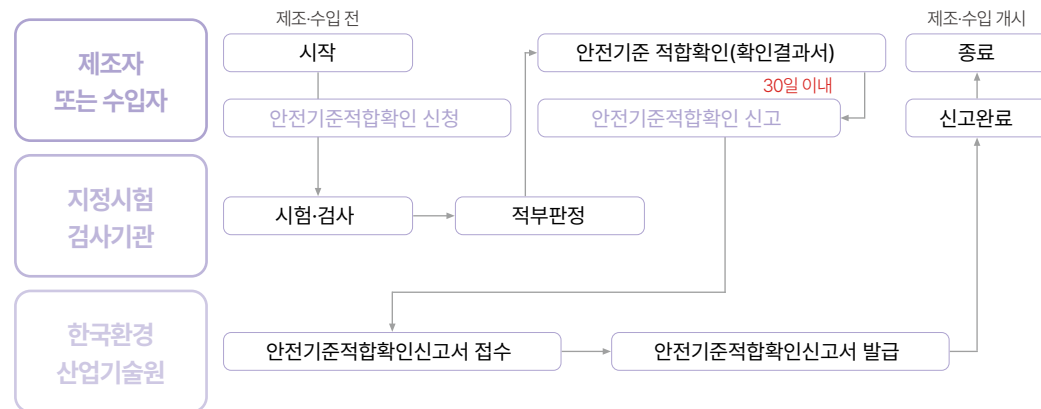
I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1.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6
2.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방법	7

I.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1.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 확인결과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미신고시 해당 확인결과서 무효)

준비사항 및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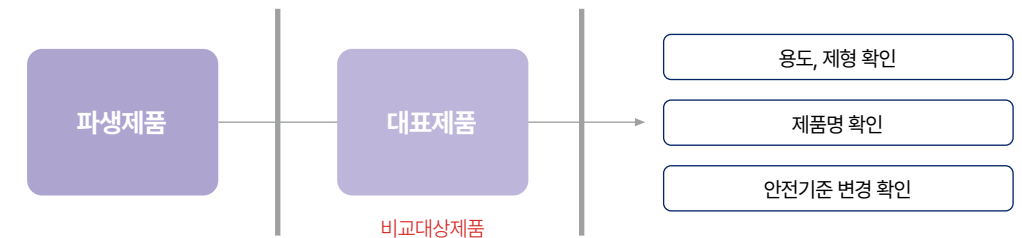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 제품을 구성하는 전 성분 및 배합비(성분명, CAS NO, 기능, 함량), 2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MSDS 또는 성분 및 배합비 자료
- 제품 사진(앞, 뒤)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 양식(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고 사이트(chemp.me.go.kr)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해당 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해당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관련 증빙자료(ODM 일 경우)
- 위탁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OEM, ODM일 경우)
- 신고증명서 사본(갱신일 경우)
-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일 경우)

확인사항

- 함유금지물질 여부 확인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 용기 재질 및 형태 확인

2.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방법



파생제품 정의

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 제품명이 다르면서
-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파생제품 예시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좋은 탈취제 브론즈	좋은 탈취제 실버	좋은 탈취제 에스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벤조산 2 %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의사항

- ✓ 대표제품의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 별도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없이 파생제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안전기준 물질 함량이 안전기준 이내로 변경된 경우 파생제품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기준 물질 종류가 변경된 경우 파생이 불가능합니다.
- ✓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안전기준 물질 이외의 성분은 변경되더라도, 파생제품의 정의에 부합하면 파생제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은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행정조치(회수, 벌금 등) 됩니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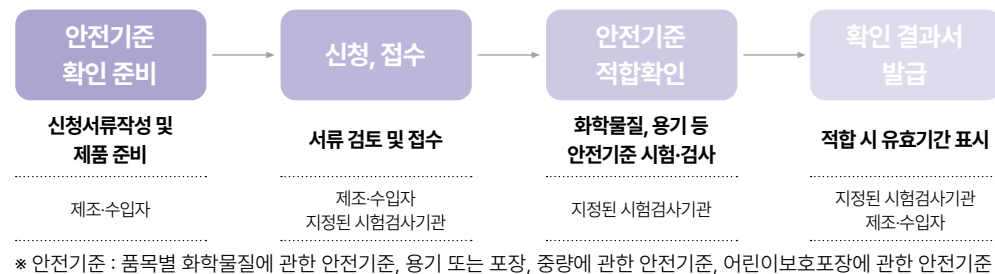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0
2. 안전기준 시험 항목	10
3.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예시	11

II. 탈취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를 신청·발급



제출 서류

- 동일한 완제품 4개(최소 용기까지는 완제품)
- 용기 시험의뢰서(제형, 용량 등에 따라 용기 재질 또는 형태가 다른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각 1부(해당 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해당 시)
- 위탁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OEM, ODM일 경우)
- 신고증명서 사본(갱신일 경우)
-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일 경우)

2. 안전기준 시험 항목

- 함량제한물질 시험 : 제품 내 함유물질, 사용물질(사용한 경우)
- 용기·용량 시험 : 겉모양, 강도¹⁾ 및 누수²⁾, 용량·중량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강도시험 제외

2)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에 한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누수시험 제외

3.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류 작성 예시

※ 제품 및 성분 정보(가상제품)

• 제품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업체명	(주)○○○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제조, 수입	직접제조	제형	분무기형
품목	탈취제	용량	500 ml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	

• 성분 및 배합비 정보(전성분)

No	성분	구분	CAS NO	배합비(%)	용도(기능)	비고
1	정제수	단일물질	7732-18-5	70	용매	주요물질
2	레몬추출물	단일물질	84929-31-7	10	탈취	주요물질
3	프로필렌글리콜	단일물질	57-55-6	10	계면활성제	제품내 사용물질, 계면활성제 (비이온계)
4	2-프로판올	단일물질	67-63-0	5	보존제	살생물질, 제품내 사용물질
5	향료	혼합물질	-	5	향료	혼합물

• 혼합물 정보

No	성분	세부성분	CAS NO	MSDS 상 함량(%)	제품 중 함량(%) ¹⁾	비고
5	향료	헥실신남알	101-86-0	40~50	2.5	알레르기물질
		d-리모넨	5989-27-5	1~5	0.25	유해화학물질, 알레르기물질
		테르피네올	98-55-5	5~10	0.5	
		아세트산벤질	140-11-4	10~15	0.75	
		리나릴아세트산	115-95-7	15~20	0.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김강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담당(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11-1111) (팩스번호:02-111-1111)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팩스번호:)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탈취제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제형 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500 mL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시험·검사기관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 ✓ OEM 방식인 경우 위탁자가 신청 주체이며, 수탁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 ✓ ODM 방식인 경우 제조자가 신청 주체이며, ODM 란에 체크표시만 합니다.
- ✓ 수입인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를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 ✓ 제품명은 고유한 상품명으로 작성합니다.(예) 탈취제(X), 좋은 탈취제 골드(O)

•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인체·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은 제외

• 용도

구분	분류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¹⁾

주 ¹⁾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제형

구분	분류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¹⁾ ,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²⁾ , 기타 ³⁾
비분사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렛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²⁾ , 기타 ³⁾

주 ¹⁾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의 제품을 말함

²⁾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³⁾ 세부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중량·용량·매수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

- 1)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음
- 2) 반고체, 고체, 가스, 액화가스 제품은 질량단위로 표시
- 3)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은 질량 (또는 부피)단위로 표시
- 4) 개수 제품은 정수로 표시하되, 부피 또는 질량 단위 병기 가능
- 5) 양이 개별판매를 목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두 개 또는 이상의 개별포장들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 그 양은 전체 개별포장의 총량을 표시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작성 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시행 2021.7.30>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1. 제품의 특징 - 은은한 향으로 실내공간에 탈취효과를 냄
	2. 사용 용도 - 주된 사용자 : 성인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실내공간용, 자동차 실내용 - 부가기능 : 없음 3. 사용방법 - 탈취가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분사해주세요.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어린이손에 닿지 않는곳에 보관하시오. - 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5. 기타사항 -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의사항

- ✓ 사용용도 중 부가기능 작성 시
 - 본 제품의 주기능 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시 안전확인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 예) 주기능이 탈취제, 부가기능이 방향제인 경우 : 방향제 추가 안전확인검사 진행
- ✓ 다제형, 다용량 등에 따라 용기 재질 또는 형태가 다른 경우 각각 용기시험이 필요합니다.
 - 예) 용기형태 : 분사형, 액체형 / 용기재질 : PP, PE, 금속, 유리, 종이

3.3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작성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1.7.30>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정제수	7732-18-5	70	용매	
주요물질 (최대함량)	레몬추출물	84929-31-7	10	탈취	
주요물질 (주요기능)	레몬추출물	84929-31-7	10	탈취	
보존제	2-프로판올	67-63-0	5	보존제	살생물질
함량제한물질	2-프로판올	67-63-0	5	보존제	사용물질
함량제한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7-55-6	10	계면활성제	비이온계, 사용물질
어린이보호포장적용 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

- ✓ 구분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 물질명은 NCIS(<https://ncis.nier.go.kr>),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msds.kosha.or.kr>)에서 CAS NO 로 검색한 물질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국문 또는 영문)
- ✓ 주요물질은 최대함량 물질과 주요기능 물질을 각각 작성하며, 정제수가 최대함량 물질인 경우 정제수 다음 최대함량 물질도 추가 작성합니다.
- ✓ 보존제, 함량제한물질 및 어린이보호포장물질은 해당물질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 주요물질과 보존제의 배합비는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물질의 경우 안전기준 이내 여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기 부적합받은 제품을 기존 시험기관이 아닌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참고] 탈취제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분사형	비분사형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70 이하	300 이하
이산화염소	10049-04-4	2 ¹⁾ 이하	2 ¹⁾ 이하
3-요오드-2-프로필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_ ²⁾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주¹⁾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²⁾ 함량 제한 없음

■ [참고] 탈취제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 공간용 ¹⁾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프로필렌글리콜	57-55-6	_ ²⁾	_ ²⁾	46 이하	_ ²⁾	_ ²⁾
벤조산	65-85-0	3 이하	10 이하	1 이하	_ ²⁾	_ ²⁾
2-프로판올	67-63-0	20 이하	24 이하	12 이하	_ ²⁾	_ ²⁾
살리실산	69-72-7	81 이하	19 이하	37 이하	_ ²⁾	_ ²⁾
벤질알코올	100-51-6	32 이하	34 이하	16 이하	_ ²⁾	_ ²⁾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6 이하	0.2 이하	_ ²⁾	_ ²⁾
살리실산메틸	119-36-8	25 이하	26 이하	13 이하	_ ²⁾	_ ²⁾
벤조산벤질	120-51-4	75 이하	27 이하	75 이하	_ ²⁾	_ ²⁾
1,2-벤즈아이소티아졸 -3(2H)-온(BIT)	2634-33-5	1.3 이하	1 이하	0.68 이하	_ ²⁾	_ ²⁾
트리클로산	3380-34-5	8 이하	3 이하	16 이하	_ ²⁾	_ ²⁾
염화디데실 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18 이하	0.0015 이하	_ ²⁾	_ ²⁾
은	7440-22-4 etc	0.04 이하	0.3 이하	0.02 이하	_ ²⁾	_ ²⁾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06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_ ²⁾	_ ²⁾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1 이하	0.7 이하	_ ²⁾	_ ²⁾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3 이하	0.4 이하	0.1 이하	_ ²⁾	_ ²⁾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_ ²⁾	_ ²⁾	56 이하	_ ²⁾	_ ²⁾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0 이하	1 이하	_ ²⁾	_ ²⁾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염, 사나트륨염	64-02-8	0.9 이하	6 이하	0.5 이하	_ ²⁾	_ ²⁾
알파-피넨	7785-26-4 7785-70-8 80-56-8	6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0 이하
모르폴린	110-91-8	7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1 이하
트리에틸렌 글리콜	112-27-6	15 이하	23 이하	9 이하	92 이하	71 이하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0.3 이하	0.5 이하	0.2 이하	2 이하	1 이하
트라이사이클로데 세닐아세테이트	5413-60-5 2500-83-6 54830-99-8	6 이하	9 이하	4 이하	35 이하	27 이하
염산	7647-01-0	0.5 미만	0.8 미만	함유금지	3 미만	2 미만
이산화규소	7631-86-9 etc	0.1 이하	1.0 이하	0.08 이하	_ ²⁾	_ ²⁾
산화아연	1314-13-2	0.4 이하	3.2 이하	0.2 이하	_ ²⁾	_ ²⁾

주¹⁾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²⁾ 함량 제한 없음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 [참고] 탈취제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음

<분사형 제품>

- 1)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물질	CAS No.
에탄올	64-17-5
1,3-비스(하이드록시메틸)-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네디온	6440-58-0
테르피네올	98-55-5
아세톤	67-64-1
9-아세틸-8-세드렌	32388-55-9
프로페인	74-98-6
자일렌설포네이트 나트륨	1300-72-7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탈취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참고] 어린이보호포장 물질

- 제품 내 아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물질	CAS No.	함유 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 (w/w) 이상	-
메탄올	67-56-1	3 % (w/w) 이상	-
디클로로메탄	75-09-2	1 % (w/w) 이상	-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 (w/w) 이상	-
살리실산메틸	119-36-8	5 % (w/w) 이상	-
수산화나트륨 ¹⁾	1310-73-2	제품내NaOH로써, 2 % (w/w) 이상	-
수산화칼륨 ¹⁾	1310-58-3		-
메타크릴산	79-41-4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개미산(포름산)	64-18-6	5 % (w/w) 이상	-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681-52-9 etc	2 % (w/w) 이상	-
과산화수소	7722-84-1	5 % (w/w) 이상	-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
모르폴린	110-91-8	5 % (w/w) 이상	-
아세토니트릴 ²⁾	75-05-8	500 mg 초과	-

주¹⁾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²⁾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인 경우

물질	CAS No.	함량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프로판올	71-23-8	-
	1-부탄올	71-36-3	-
	1-펜탄올	71-41-0	-
	1-헥산올	111-27-3	-
	1-헵탄올	111-70-6	-
	1-옥탄올	111-87-5	-
	1-노난올	143-08-8	-
	1-데칸올	112-30-1	-
	1-운데칸올	112-42-5	-
	1-도데칸올	112-53-8	-
	1-트리데칸올	112-70-9	-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
테르펜 알코올		98-55-5	-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

-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인 경우

■ [참고]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기준

-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음

-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하여야 하는 용기
-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

3.4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1.7.30>

화학물질의 비합유·비사용 확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〇〇〇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김강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담당 (전자우편: 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111-1111) (팩스번호: 02-111-1111)
제품 정보	품목	탈취제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제형	분무기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사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5	원료 납품자 수	1
	함유금지물질(A)			불임자료 표시
	사용물질(B)			불임자료 표시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불임자료 표시
확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 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 함유금지물질은 공통기준을 포함하고, 용도별 함유금지물질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 ✓ 원료 성분내역 또는 MSDS 등을 통해 함유금지물질을 확인합니다.
- ✓ 사용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합니다.

■ [참고] 함유금지물질[공통기준]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 ¹⁾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주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참고] 함유금지물질[탈취제]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산화에틸렌	75-21-8	전 제형	_ ²⁾
2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_ ²⁾
3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4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5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_ ²⁾
6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etc	전 제형	_ ²⁾
7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_ ²⁾

주²⁾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물질 사용여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함유금지물질(A)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 예 ☒ 아니요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 예 ☒ 아니요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 예 ☒ 아니요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6	염화벤잘코늄류 ¹⁾	분사형 ☐ 예 ☒ 아니요
7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분사형 ☐ 예 ☒ 아니요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전 제형 ☐ 예 ☒ 아니요
주 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탈취제 함유금지물질(A)		
1	산화에틸렌	전 제형 ☐ 예 ☒ 아니요
2	나프탈렌	전 제형 ☐ 예 ☒ 아니요
3	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4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 예 ☒ 아니요
5	염화비닐	전 제형 ☐ 예 ☒ 아니요
6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 예 ☒ 아니요
7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 탈취제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B)		
1	프로필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벤조산	☐ 예 ☒ 아니요
3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 예 ☐ 아니요
4	살리실산	☐ 예 ☒ 아니요
5	벤질알코올	☐ 예 ☒ 아니요
6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7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8	벤조산벤질	☐ 예 ☒ 아니요
9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 예 ☒ 아니요
10	트리클로산	☐ 예 ☒ 아니요
11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예 ☒ 아니요
12	은	☐ 예 ☒ 아니요
13	염화벤잘코늄류 ¹⁾	☐ 예 ☒ 아니요
14	피레트럼	☐ 예 ☒ 아니요
15	2-옥탈-3(2H)-이소티아졸론	☐ 예 ☒ 아니요
16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 예 ☒ 아니요
17	트리에탄올아민	☐ 예 ☒ 아니요
18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 염	☐ 예 ☒ 아니요
19	알파-피넨	☐ 예 ☒ 아니요
20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21	트리에틸렌 글리콜	☐ 예 ☒ 아니요
22	모노에탄올아민	☐ 예 ☒ 아니요
23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24	염산	☐ 예 ☒ 아니요
25	이산화규소	☐ 예 ☒ 아니요
26	산화아연	☐ 예 ☒ 아니요
주 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1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메탄올		☐ 예 ☒ 아니요
3	디클로로메탄		☐ 예 ☒ 아니요
4	1,2-디클로로에탄		☐ 예 ☒ 아니요
5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예 ☒ 아니요
7	메타크릴산		☐ 예 ☒ 아니요
8	개미산(포름산)		☐ 예 ☒ 아니요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예 ☒ 아니요
10	과산화수소		☐ 예 ☒ 아니요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12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13	아세토니트릴		☐ 예 ☒ 아니요
1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propanol	☐ 예 ☒ 아니요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1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 예 ☒ 아니요
16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 예 ☒ 아니요
17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예 ☒ 아니요
18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예 ☒ 아니요
19	pH (액상제품)	2.0 초과 11.5 미만 (2.0 < pH < 11.5)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동점도 (액상제품) (pH “비해당”에 체크 시에만 작성)	40 °C에서 동점도 20.5 mm ² /s 이하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아니요
20	가정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	☒ 가정에서 보관·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보관 사용 할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 제외)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물질 확인 시 위 CAS No.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료 내 위 물질들이 혼합물로 존재 할 경우, 물질명과 CAS No.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 표 자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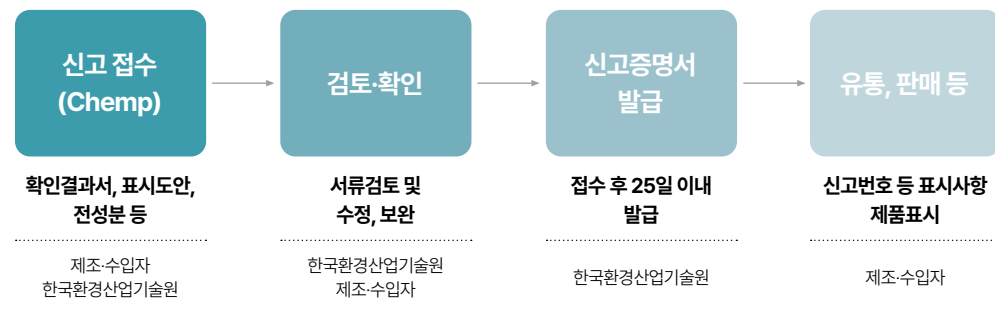
탈취제 안전기준 신고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28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등록	28
3. 안전기준 신고 예시	29

III. 탈취제 안전기준 신고 방법

1.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 신고



*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working day 기준) 이내 신고

제출 서류

준비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질의 MSDS 또는 성분내역서(CAS NO, 성분명, 함량, 기능)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 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해당 시)
- 용기검사 성적서(해당 시)
-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
- ODM 납품 증명서류(해당 시)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등록(chemp.me.go.kr)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일반회원 가입
-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위해서는 각 기업에 등록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담당자(일반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일반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 신고 → 신고서 작성으로 접근

* 회원등록 세부내용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3. 안전기준 신고 예시

3.1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주)000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김강력
담당자 성명	김담당	담당자 연락처	02 - 123 - 1234
담당자 이메일	1234 @ naver.com		
소재지(사업장) 주소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소재지 전화번호	02 - 111 - 1111	소재지 팩스번호	02 - 111 - 1111

주의사항

- ✓ 신고인 정보는 회원가입 시 기입했던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회원 정보 수정 후 신고서를 재작성합니다.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3.2 신고 유형

☞ 신고 유형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제조/수입	☒ 추가 ☐ 제조 ☒ 수입
제조국(수입인 경우)	작성방법
제조회사(수입인 경우)	

주의사항

- ✓ OEM의 경우 수탁자 정보 입력(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회사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 ✓ ODM의 경우 위탁자(판매자) 정보를 입력(제품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회사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하고 ODM 납품 증명서류 업로드
- ✓ 수입의 경우 해당 수입 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와 제조회사명을 입력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품 표시도안에 기재된 제조회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 제조/수입 옆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제조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신고유형 옆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검색조건에 맞게 찾아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통매뉴얼 참조)
 - 신청서를 적용하면 선택한 발행번호에 해당하는 분류, 품목과 확인결과서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실제 성적서 정보와 상이한 부분은 직접 수정 후 저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3.3 신고 대상 정보

■ [참고] 항목별 작성방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대표/파생/변경 구분	대표제품		
제품명 작성방법	좋은 탈취제 골드 제품명 중복 확인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 작성방법	※추가 버튼 클릭시 대표품목 선택 가능합니다. 방향·탈취제품 탈취제 자동차용 실내용 추가 (필수) 대표품목 방향·탈취제품·탈취제·일반용(실내공간용) 삭제 대표품목 방향·탈취제품·탈취제·자동차용(실내용) 삭제		
제형 작성방법	분사형 분류 선택 추가 (필수) 분사형·분무기형 삭제		
제조 연월 작성방법	별도표기 선택 년 선택 월	유통기한 작성방법	해당없음 제조일로 부터 개월 년
어느점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 작성방법	선택	액성 (탈취제품, 세탁제품) 작성방법	액성 선택
중량/용량/매수/크기 작성방법	500 ml		
표준사용량 작성방법	해당없음		
어린이보호표장 대상여부 작성방법	해당 미해당		
사용방법 작성방법	해당없음 탈취가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분사해주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방법	1.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3.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주의 사항문구(필수)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응급처치 작성방법	1.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2. 제품이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응급처치 문구(필수)			

주의사항

- ✓ 제품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품 표시도안에 기재된 제품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 하나의 제품에 두 개 이상의 품목이 있을 경우, 다시 드롭다운박스 선택 및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 ✓ 대표품목을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대표품목에 따라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파생제품 신청시 동일한 품목을 대표제품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표준사용량이 있는 경우 표준사용량에 대한 액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용량이 있는 경우 대표제품 용량(500ml)과 그 외 용량을 콤마로 구분하거나 범위로 표시합니다.
(예) 100, 300, 500ml 또는 100~500ml
- ✓ 사용상 주의사항은 작성방법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필수 주의사항과 권장 주의사항을 선택합니다.
(그외 추가 주의사항을 기입할 수 있음)
- ✓ 응급처치는 작성방법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필수 응급처치와 권장 응급처치를 선택합니다.
(그외 추가 응급처치를 기입할 수 있음)

3.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선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pdf)		업로드

화학물질 확인결과

확인항목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추가
이산화염소	mg/L	2 이하		적합 ☒	삭제불가
글리옥살	mg/kg	30 이하		적합 ☒	삭제불가
폴알데하이드	mg/kg	12 이하		적합 ☒	삭제불가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mg/kg	8 이하		적합 ☒	삭제불가
메탄올	mg/kg	2,000 이하		적합 ☒	삭제불가
아세트알데히드	mg/kg	70 이하		적합 ☒	삭제불가

주의사항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반드시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사본을 첨부합니다.
- ✓ 확인결과서 내용은 반드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 두가지 이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 안전기준 확인결과서 정보는 용도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 다품목(탈취제, 방향제)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품목의 확인결과서 내용을 모두 기입합니다.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기준입니다.
- ✓ 확인결과서상 확인결과서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완료일을 유효기간 시작일로 기재합니다.
- ✓ 확인기준이 확인결과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확인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용도와 제형을 삭제한 후 다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3.5 함유성분(전성분)

■ [참고] 전성분 작성방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CAS No.	물질명	배합비(110%)	용도(기능)	표시사항대상물질 (해당물질만 선택)	추가
☐ 혼합물질 ☒ 단일물질 7732-18-5 검색	정제수	70	용마제 ☒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84929-31-7 검색	레몬추출물	20	기타(직접입력) ☒ 탈취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57-55-6 검색	프로필렌 글리콜	10	계면활성제 ☒ 비이온계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67-63-0 검색	2-프로판올	5	보존제 ☒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CAS No. 없음 검색	향료(헤실신남알 등)	5	기타(직접입력) ☒ 향료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MSDS 또는 함유물질 정보 업로드					
상세 물질 입력					
CAS No.	물질명	배합비의 최대함량(%)	추가		
101-86-0 검색	헬실신남알	50	삭제		
5989-27-5 검색	리모넨	5	삭제		
8000-41-7 검색	테르피네올	10	삭제		
140-11-4 검색	아세트산 벤질	15	삭제		
115-95-7 검색	리나릴 아세트산	20	삭제		

☒ 상기 입력된 물질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품목 생산 시, 사용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 또는 혼합물질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 ✓ 제품을 구성하는 각 혼합물질과 단일물질의 배합비 합은 100%를 맞춰야 합니다.
(단, 향료 등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단일물질의 합은 100% 이상 또는 이하도 가능)
- ✓ 함량이 최소~최대값을 갖는 경우 최대값으로 입력합니다.
- ✓ 제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이 표시사항대상물질(주요물질, 나노물질, 살생물질)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복수 선택 가능)
- ✓ 주요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 알레르기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표시해야하는 사용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물질명은 국문으로 입력합니다.

■ [참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¹⁾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¹⁾

주¹⁾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3.6 표시도안 견본

■ [참고]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표시도안 견본 (첨부분서등 포함) (pdf, hwp) 작성방법 표시도안 미리보기 양식 다운로드	업로드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표시도안 미리보기 참조) (파일사이즈 3MB 이하) (gif, jpg, jpeg, png, zip) 작성방법	전면사진 업로드
	후면사진 업로드

 [신고번호] 0000 [품목] 탈취제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제형] 분무기형
[제조연월] 별도표기	[용량] 500ml	
[제조자, 주소, 연락처]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111-1234		
[사용물질] 주요물질 : 정제수, 레몬추출물 계면활성제 : 프로필렌글리콜(비이온계) 보존제 : 2-프로판올 알레르기물질 : 헥실신남알, 리모넨		
[사용방법] 탈취가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분사해주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1.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3.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응급처치] 1.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2.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그림. 표시도안 견본(표시면적 100cm² 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0000 품목 : 탈취제 제품명 : 좋은 탈취제 골드 주요물질 : 정제수, 레몬추출물 제조자, 연락처 : ㈜OOO, 02-111-1111

그림. 표시도안 견본(표시면적 50~100cm²)

품목 : 탈취제 제품명 : 좋은 탈취제 골드 신고번호 : 0000
--

그림. 표시도안 견본(표시면적 50cm² 미만)



주의사항

- ✓ 표시도안 미리보기 후 '양식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표시도안 견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 표시도안은 반드시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번호, 품목,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 응급처치, 신호어는 반드시 눈에 띄게 굵은색, 밑줄, 색상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과 표시도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는 그 용기도 포함하여 1차 포장 제품과 2차 포장 제품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도안을 부착 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제품 설명서, 보조 태그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차 포장 제품의 경우 2차포장면의 표시면적에 맞는 표시도안을 부착합니다.
- ✓ 신고 제품의 표시면적이 다양한 경우, 표시도안과 표시도안이 부착된 후면사진은 표시면적별로 구분하여 모든제품 또는 대표제품에 대해 첨부합니다.
- ✓ 표시면적 증빙은 '제품용기 및 2차포장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 를 첨부합니다.
- ✓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도안 내용은 신고 시 제출한 표시도안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디자인은 다르게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이 함량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신호어와, 그림문자를 표시합니다.

3.7 관련 서류 첨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pdf)

기타첨부 서류
(pdf)

추가

주의사항

- ✓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첨부합니다.
- ✓ 용기 시험성적서(필요 시),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필요 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필요 시), ODM 납품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기타첨부 서류에 첨부합니다.

■ [참고]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 측정 방법' 작성 방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작성자
㉔OOO	-	좋은 탈취제 골드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중량 / 용량 등	용기 / 포장 형태	측정치수 (cm)	표시 면적 (cm ²)	표시도안 견본 적용 여부
작성 방법	'제품용기' 인지 '포장 상자' 인지 표기	신고 제품의 중량(용량)을 각각 기재	제품 용기 및 포장상자의 형태를 기재 (P46~P48 참조)	원통형 구조 : 높이, 둘레 길이 측정표기 각형 구조 :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표기	최종 면적 표기	표시도안 견본 1안, 2안, 3안 중 부착할 표시도안 견본을 선택하여 표기
1	제품용기	500, 1000ml	원통형	10*15, 15*20	150, 300	1안

신고 제품에 대한 용기 및 포장상자에 대한 표시 면적 계산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참고]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 작성 방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참조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용량	작성자
㉔000	-	좋은 탈취제 골드	1,000 ml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HDPE	PP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
1	1,000 mL	HDPE	PP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IV

탈취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IV. 탈취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안전확인·신고 하려고 하는 제품은 실내 공간에 사용하는 룸스프레이입니다. 이 제품이 탈취제인지 방향제인지 모르겠습니다.

A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의 방향제는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한 제품이고, 탈취제는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향제, 탈취제의 품목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두 용도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탈취제, 방향제 다품목으로 확인·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취제, 방향제 용도 선택 예시>

탈취제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방향제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Q2. 반려동물에게 뿌리는 탈취제도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반려동물용 용품에 뿌리는 탈취제는 대상이지만, 반려동물에게 직접 뿌리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탈취제(모발 또는 피부에 직접 적용)의 경우 동물용의 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식약처를 통해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의 용품과 동물에 모두 탈취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각 법에 따라 시험·검사,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품 표면에 두 기준에 맞는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시 라벨을 모두 붙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제품	관리기관	검사, 신고, 표시사항
반려동물용 탈취제 용도 : (일반용(물체용)) 반려동물용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탈취제
	식약처	동물용 의약외품 애완용제제(탈취제)

Q3. 살균기능이 있는 탈취제는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A3. 탈취제, 살균제 모두 해당되는 다품목 제품의 경우 두 가지 품목 모두 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 탈취제, 살균제의 품목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용도 기재 시 사용 대상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확인·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취제, 살균제 다품목으로 안전확인·신고 시, 제품에 '살균', '항균'이라는 효과·효능의 표시·광고를 위해서 효과·효능확인서와 함께 그에 대한 성적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따라 '대장균 99.9% 제거' 등 정확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살균제, 탈취제 용도 선택 예시>

품목	물체에 사용	실내공간에 사용
탈취제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물체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살균제	일반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허크리너 살균용)	밀폐공간용 ¹⁾ 주 ¹⁾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Q4. 분무기로 사용하는 액상제품의 pH가 12.0이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데,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4.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pH 12.0, 동점도가 20.5mm²/s 이하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기준 초과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입니다. 아래 적용물질에 대한 제외기준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이 제외됩니다. 제외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와 함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 대한 제외 기준

-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하여야 하는 용기
-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
(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 실제 중량 15kg 이상의 제품
-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 어려운 제품(예 :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

Q5. 분무기에 덜어 사용하는 액체형 제품은 제형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보충형 제품은 원제품¹⁾의 제형을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두 예시를 참조하여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주세요

- 1) 분무기통에 덜어 사용하는 보충형 제품
보충형(분무기형)으로 대표제품을 신고합니다.
그 후 변경·파생신고를 통해 원제품의 제형인 '분무기형' 추가가 가능합니다.
- 2) 액체형으로 사용하면서 분무기통에 덜어 사용하는 보충형 제품의 제형은
보충형(분무기형), 액체형으로 대표제품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도 변경·파생신고를 통해 '분무기형, 보충형(액체형)'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변경·파생 신고 시 용기의 재질과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용기시험을 의뢰하여 변경된 용기의 '용기누수, 용기강도, 겉모양, 중량' 시험을 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 하면 됩니다.

¹⁾ 보충형 제품을 넣어서 쓰는 원래 제품

대표제품 제형	판매형태	제품 사용형태	판매형태	제품 사용형태
	액체형	분무기형	액체형	액체형, 분무기형
	보충형(분무기형)		보충형(분무기형), 액체형	
	변경신고 ↓ 제형추가		변경신고 ↓ 제형추가	
변경·파생제품 제형	분무기형, 보충형(분무기형)		분무기형, 보충형(액체형) 보충형(분무기형), 액체형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매뉴얼

탈취제(Deodorizing Agents)

발행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일	2022년 11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전화번호	1800-0490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s://chemp.me.go.kr